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33121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고, 피항소인	○○광역시 ○○구청장
참가행정청	○○○○○장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352 판결
변론종결	2024. 5. 31.
판결선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215,925,14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취득세 등 33,692,9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등 참조), 종전 조례의 폐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결론은 앞서 본 바와 다르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20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이○○

판사 심○○